



의료기관평가인증원

수신자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2021년 제3차 환자안전 주의경보 확산 협조요청

1. 귀 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2. 우리 원은 「환자안전법」 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받아 보고된 환자안전사고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환자안전 정보 환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3. 위 호와 관련하여,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환자안전 주의경보가 발령되어 귀 협회와 연계된 산하 협회 및 보건의료기관에 확산을 요청드리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- 아래 -

- 가. 목적: 환자안전사고 정보 및 재발방지대책 등 관련 정보 공유
- 나. 주요내용: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(붙임 참조)
- 다. 게시위치: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(www.kops.or.kr)

붙임 [환자안전 주의경보지] 환자에게 처방되지 않은 다른 의약품 투여 1부. 끝.

